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0일, 박춘희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5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춘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박춘희 의원
- 제안일자 : 2024. 11. 20.
- 회부일자 : 2024. 11. 25.
- 상정일자 : 2024. 12. 5.

2. 제안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력의 군수 책무(안 제4조)
- 지원 적용 범위(안 제5조)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여성기업인 단체 활동 지원(안 제7조)
- 포상(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자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경영능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정의)에서 “주된 사업장” 및 “여성기업인단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여성기업 확인)에서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를 따르도록 기준을 마련함.
- 안 제4조(군수의 책무)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여성기업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에서는 여성 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평창군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여성기업인을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불임 관계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2017.10.13.] 외 89건

(관내 7곳: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영월군,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강릉시)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박춘희 의원)

의안 번호	363
----------	-----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20일
발의자: 박춘희 의원
찬성자: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의원

1. 제안이유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력의 군수 책무(안 제4조)
 - 지원 적용 범위(안 제5조)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여성기업인 단체 활동 지원(안 제7조)
 -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11. 6. ~ 11. 19.(14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4. 10. 29. ~ 11. 4. 아래표 참조.

조례안(원안)	집행부 의견(경제과)	검토결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랙) 2. (생 랙) 〈신 설〉 3. “여성기업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u>결성한</u>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u>주된 사업장</u> ”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 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 ----- 결 성한 10명 이상 -----.	(수용)
〈신 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①이 조례는 평창군에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 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2017. 12. 29.>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제고를 위하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
연락처	(033) 330 -2502